

NSL.1.42
83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 ◇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 일 시 1996년 12월 14일(토) 오후 2시 ~ 6시
- 장 소 변호사회관
- 주 관 학술단체협의회
- 공동주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 개회 및 인사말

◆ 1부 주제발표

- 발제1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김영규(인하대 교수)
2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이창호(경상대 교수)
3 소위 문민정부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한택근(민변, 변호사)

◆ 2부 - 종합토론

기조발제 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종합토론 강경근(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부위원장, 숭실대 교수)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

김경남(NCC 인권사무국장)

이기욱(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 +

정성희(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 +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

사회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 차례 ◇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 1부 주제발표

- | | |
|--------------------------------------|----|
| 1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 김영규 | 1 |
| 2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이창호 | 13 |
| 3 소위 문민정부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 한택근 | 27 |

◆ 2부 - 기조발제

- | | |
|----------------------------------|----|
| 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 / 서준식 | 39 |
|----------------------------------|----|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김영규
인하대학교 교수

I. 서론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그 무거운 형벌만큼이나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을 제어하는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위한 발전을 저해해 왔다. 이 국보법은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해에 제정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손실은 이루다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함은 물론 국가 사회의 민주화 도정에 커다란 장애물로 남아 있다.

국보법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 폐해지만,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당사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의 인생과 생존권을 망가뜨린 엄청난 죄악의 근원이자 상징으로서 기능해 왔다. 이는 5·6공화국과 현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인한 구속자 수의 간단한 파악에서도 가능해 짐작할 수 있다. 즉, 7년의 5공시기에는 1천 5백명, 6공시기 5년간에는 2천명에 이르고, 현정권에서는 집권한지 4년도 안되는 지금까지 1천명 가까이 국보법으로 구속되었다. 구속자 수의 단순한 비교만 보더라도 김영삼정권은 과거 5·6공 군사독재정권과 한치의 차이도 없는 독재정권으로서의 면모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

현정권하에서 국보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조직 사건들은 민중정치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한국노동청년연대,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이하 '노진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한 단체들이고, 또한 선거시기에도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정치활동조차 봉쇄하고 있다. 현정권은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다름없이 아

무런 잣대나 기준도 없이 '정권 안보'를 위해 마구잡이로 국보법을 이용하고 있다. 현정권은 이에 더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악하여 개인의 인권유린은 물론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공안통치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본고는 국보법이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활동 영역을 통상적인 구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누어 그 폐해들을 지적할 것이다.

II. 정치에 미친 영향

남한 정부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보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이승만 정권이래 현정권까지, 또한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검찰, 사법부 등이 일관되게 국보법을 옹호하고 국헌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이다. 그러나 한보 양보하여 역대 정권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요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권력이 '국가보안'이란 이유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가 국가 안보란 미명 하에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에도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에로 한정하는 선진국의 선례를 존중하는 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체제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국보법은 전혀 자유민주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법률이다. 선진국에서처럼 자유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국보법은 규정되어 있고 실제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래 이용되어 온 국보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이른바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기초가 되는 민주적 정치제도와 다원적 정치과정,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앞세우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육성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국보법의 유산으로 남한 사회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 권력이 창출되고 독재정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역대 독재 정권은 예외 없이 국가 안보를 빌미로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 개혁을 극구 저지해 왔고, 독재 정권에 도전하는 민주 세력들을 정치 일선에서 제거해 왔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민간, 군사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국보법과 반공법(제5공화국 때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을 적용한 역사가 바로 한국의 정치사이다.

국보법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민주적 권력과 정치의 정착에 지장을 초래한 주범인 동시에 보수 우익세력들을 핵심으로 하는 정권과 정당, 정치인들을 양성하는데 적극 기여했다. 남한의 보수우익세력들은 전통적으로 친일·친미 외세종속세력들로서 민족분단과 민중수탈의 주구들이다. 그들의 사상적 근원은 서구 파시즘과 군국주의·제국주의이며 결코 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으며 다만 그것을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만큼 그들이 민간 독재, 군사 독재를 정치적 노선으로 채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승만 정권이래 지금까지 극우보수세력들이 아무리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발언이나 성명서를 내고 출판물을 발간하며, 심지어 집회와 시위를 대대적으로 해도 국보법상의 어떤 규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남한 정치는 극우보수세력과 여러 정파의 보수주의가 전횡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혁신적, 진보적 정치는 아예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한 주범이 바로 국보법임을 알 수 있다.

국보법은 극우보수세력들이 반북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 나아가 민족민주운동과 노동운동, 민중운동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 제거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극우보수주의자들은 서구나 일본이나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자신들을 민족주의자, 애국자, 민주주의자, 평화주의자 등으로 위장하여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면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용공 조작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이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극우보수세력들이 준동하게 하는데 역시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국보법 자체이다. 국보법이 존재해 있는 것만으로도 극우보수주의자들은 권력과 정치와 여론의 '안방'에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극우보수세력들은 국보법을 빌미로 반민주적, 반통일적, 반민중적 정치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는 민주적 기본권의 향상, 남북한의 자주적·평화적 통일,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등을 좌의 용공으로 매도하는 레드-컴플렉스를 조장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체제내화, 보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III. 경제에 미친 영향

한국 경제는 20세기말 현재 거의 모든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보편화와 동시에 독점자본 주도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필연적으로 노자간 경제력의 격차 그리고 자본간 생산력의 격차가 정착·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격차는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더욱 심화되어 이제 한국경제에 내재하는 구조적 모순은 해결하기가 어

렵게 됐다. 이러한 모순의 특징은 결국 노자간 대립 관계와 자본간 지배-예속 관계로 요약된다. 한국에서 노자간 대립 관계는 결국 8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민주노조 건설운동과 그후 노동의 자본에 대한 적대적 투쟁으로 분출되었다.

정권과 자본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이래 민주노총 원년인 금년까지 근 10년에 걸쳐 노동 악법들을 동원하는 외에 국보법을 이용하여 노동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해 왔다. 이 기간 시국관련 조직 사건의 50% 정도가 노동운동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 또한 국보법위반 구속자 가운데 25% 수준으로 노동자 수가 유지되었다. 특히 국보법위반 구속자의 55% 정도가 이적표현물과 관련되었다. 이는 사법당국이 이적표현물과 그 위반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확대 한데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국보법을 노동운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권력과 자본이 사회변혁 운동의 주체 변화라는 민중운동의 발전을 경계하는 동시에 전투적 노동운동을 극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제는 국보법이 노동운동에 대한 중요한 탄압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결국 권력이 독점재벌의 이해관계를 위해 노동운동을 겨냥한 가혹한 탄압 수단으로 국보법 적용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한국 경제는 30대 내지 50대 재벌들에 의해 파행적으로 지배, 관리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점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한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경제정의는 독점재벌의 경제지배를 청산하는 재벌해체론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진보적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재벌해체론은 90년 민중당강령, 92년 백기완 민중후보 선거공약에서 국민에게 실천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민중정치연합, 한국노동청년연대, 노진추 등이 대표적으로 재벌해체에 의한 한국 경제의 재편을 선언해 왔다. 그런데 위의 3개 단체는 차례로 국보법에 의한 침탈을 받아 왔다.

현정권이 재벌해체를 주장한 단체들을 특히 지목하여 국보법으로 탄압한 것은 그 이전의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이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국보법이 배태한 결과를 규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보법이 현정권 하에서 권력과 재벌과의 유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이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복지를 희생시키는 신보수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보법이 재벌 중심의 경기부양책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심화되어 온 경기양극화, 재정적자, 통화팽창 등은 물론 현 경기침체(공황)현상인 저성장, 고물가, 경상수지적자 등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보법은 한국경제의 노자간 대립이 격화되는 시기에 노동운동을 탄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방해해 온 법률이다. 이는 권력이 자본에게 위기가 도래할 경우 국보법을 이용하여 노동을 철저히 탄압하겠다는 정경 유착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경제정의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노동자·민중의 삶을 고양시키는데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은 재벌해체를 주장하는데 앞장선 단체들에게 국보법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다.

IV. 사회에 미친 영향

한국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적 생산을 모색함에 따라 이의 모체가 되는 서구식 사회구조로 탈바꿈하여 왔다. 이에 따른 한국社会의 변화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간 박애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를 표방해 왔다. 18세기말 불란서혁명을 기점으로 확립되어 온 시민사회론은 각국의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명문화하여 국가에 의한 부당한 기본권의 침해를 금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시민사회론을 모태로 하는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보법은 민주주의 이념과 시민사회를 전제로 한 개인의 모든 기본권을 정면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법률이다. 미국은 물론 UN등 국제사회가 국보법의 개폐를 우리 정부에게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 기구가 국보법의 폐지를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례는 1992년 7월 UN인권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은 국보법이 아니라 "일반 법률과 특별 법률로 국가 안전에 대한 범죄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국보법은 다소 모호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는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활동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중략) 결론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위원회가 인식하고 있는 국보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1996. 8. 6로부터 인용) 이러한 UN인권위원회의 촉구가 서구 전통의 시민권에 부합하는 것인 만큼 국보법은 남한에서 시민社会의 구축과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결정적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 앞에서 시민은 권력의 신민(臣民)이며, 시민사회는 과거의 군주사회·봉건사회

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국보법이 제정된 이래 국보법 위반자인 이른바 좌경용공분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안전기획부(중앙정보부의 후신), 국군기무사(국군보안사령부의 후신), 경찰 대공담당기관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모두 국내외로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을 자행하는 국가기관으로 그 악명과 오명을 떨치고 있다. 이는 국보법이 낳은 또 하나 우리 사회의 수치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들 기관이 과거에 저지른 끔직한 사건들은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다. 이들 정권안보기관들은 인신구속시 법률로 정한 규정을 아예 무시하여 피의자와 가족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의 영장도 없이 강제수색, 강제연행, 강제구금 등은 예사이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연루자로 몰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들의 인권유린 폭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이들 기관은 피의자들의 인권유린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고문이란 만행을 공공연히 자행하였다. 그들의 잔인하고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문사란 조작된 살인으로 회생되었고, 이러한 살인을 간신히 모면한 수많은 사람들은 신체불구자, 정신장애인으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만들었다. 따라서 국보법은 이를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인권이 없는 사회,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또한 이들은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물론이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도하여 국가행정위에 군림하여 왔다. 나아가 이 기관들은 경제적 이권에 개입하는 등 우리사회를 지금처럼 불법비리와 부정부패를 만연시키는데 일조를 해 왔다.

V. 문화에 미친 영향

우선 먼저 학문분야에 끼친 국보법의 폐해부터 지적해 보자. 지식과 학문의 발전이 국보법에 의해 저지 당하고 방해받아 온 사례는 너무나 많다. 여기서는 단지 최근의 사례인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관해 언급코자 한다. 이 사건은 대학 등 지식인 사회에 오래간만에 엄청난 파급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하면 94년 당시 신공안정국의 기류가 마침내 대학 울타리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해 8월 검찰이 느닷없이 경상대학 9명의 교수들이 공동 집필한 '한국사회의 이해'란 이 대학 정규 교양교재를 국보법상 이적표현물로 단정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조치는 당시 자인 집필교수들의 즉각적인 반발은 물론이고 학계 등 지식인 사회의 엄청난 비판을 초래하였다.

검찰의 국보법을 이용한 조치에 대한 비판은 대표적으로 학술단체협의회(8월5일 성명서 발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8월6일 성명서 발표), 국립대학교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등 학계, 문학계, 예술계, 출판계를 망라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8월9일 성명서 발표) 등의 성명서에서 강도 높게 제시되었다. 이를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학술단체, 지역 교수단체 등에서 잇달아 사정당국의 처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인천·경기 민주교수협의회도 8월 18일 검찰의 입장과 경상대당국의 폐강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경기 민교협의 입장은 '한국사회의 이해'란 교재는 지난 89년부터 교육부와 각 대학 당국이 국책과목인 이른바 '국민윤리'를 정리하면서 교양과정의 재편에 따라 설강된 과정의 교재로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진보적 학자간, 그리고 보수와 진보적 학자간 논쟁과 토론을 거쳐 이미 공인된 연구성과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어 정부가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 본인의 글 참조). 정부가 경상대 교수들에게 국보법의 낳은 칼을 들이 휘으로써 우리 학문은 과거 '윤리 아닌 윤리'를 가르친 군사독재정권의 국민윤리시대로 되돌아간 것이다.

국보법은 이처럼 학문연구와 대학교육에 대한 탄압 이외에 또한 문학활동에 대해서도 그 마수를 뻗친 사례가 엄청나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만 들어보자. 그것은 조정래씨가 쓴 '태백산맥'이다. 검찰은 지난 94년 3월에 들어서면서 '태백산맥의 이적성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조선일보의 동조성 보도로 신공안정국의 분위기를 잡아갔었다. (한국노동청년연대,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1996으로부터 인용) 그런 점에서 앞에서 본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태백산맥이 86년 10월에 처음 출간된지 94년은 9년째 되는 해이고, 이미 수백만 권의 책이 팔려 나가 대학에서도 지정 교양도서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기를 권유했던 책인데도 국보법을 동원해 재단하려고 하다니,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국가권력 자체의 체면이 말이 아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언론과 박홍총장을 이용하여 한껏 위기의식을 조장해 냈던 것이다. 현정권의 이러한 위기의식 조장과 공안정국 조성은 제6공화국 때 태백산맥과 같은 소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던 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전노협소속 노조사무실에서 압수 수색을 하다가 태백산맥이 발견되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까지 했었다. 이쯤 되면 '막걸리 국보법'에서 고무줄 국보법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독재정권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예술활동, 특히 미술작품에 까지 국보법을 적용하여 이적표현물로 몰아갔다. 1989년 8월 4일 안기부는 1988년 11월부터 서울, 전주,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갑오경장으로부터 현재의 조국통일운동기까지의 민중운동 과정을 묘사한 <민족 해

방 운동사>라는 가로 77m, 세로 2.6m짜리 대형 걸개그림 11컷을 나누어 만든 뒤 이를 슬라이드 필름에 담아 1989년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 민족학교를 통해 평양축전 축하작품으로 북한에 보낸 혐의로 홍성담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조선일보 1989년 8월 4일자 기사 인용) 이 그림은 5개 지역 민족미술운동전국연합(민미련)회원 30여명이 분담해 제작한 것으로 밝혀져 공동 제작에 가담한 화가 차일환, 정하수, 백운일, 전승일씨 등이 연달아 구속되었다. 이를 이적표현물로 단정한 당국의 태도에 대해 미술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갑오농민전쟁부터 3·1민족해방운동을 거쳐 4·19와 광주항쟁, 6월 및 7·8월 항쟁, 그리고 최근의 조국통일운동에 이르는 민족해방운동을 민중의 입장에서 형상화한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은 근대 이후 면면히 계속되어 온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최근 학계의 역사적 평가와 연구성과에 기초한 것이며 그 정당성이 이미 여러번의 전국순회전시를 통해 수 만명의 노동자, 농민, 시민 대중으로부터 증명받은 바 있는 그림이다. 우리 민족의 면면한 반외세투쟁의 형상화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바로 분단 현실에 기반해 있는 외세와 사대주의 독재정권인 것이다.”(민족미술협의회, 1989년 8월 11일자 「민족미술인 홍성담, 정하수, 차일환씨의 구속과 연이은 미술탄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 (박원순,『국가보안법연구』2, 219~220쪽에서 인용)

국보법이 이처럼 문화에 끼친 영향을 검토해 보면 우리사회가 금세기 중반 서구에 횡행했던 파시즘이 활개를 치는 사회라는 것을 쉽게 규명할 수 있다.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은 정부를 비판한 문인, 지식인, 언론인들을 탄압함으로써 그 결과는 어땠는가? 그들은 스스로 그 정권의 종말을 재촉한 셈이 되었다. 나치 정권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브라운 박사는 원자탄을 연구 개발하였으며 미국정부는 그것을 일본에 투하함으로써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표방했던 당시 세계의 극우보수정권들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을 끝장내었다. (물론 원자탄을 사용한 미국정부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옳다) 남한 국민들은 동백림사건으로 국내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던 윤이상씨 같은 분이 왜 독일에서 작곡 활동을 하다가 숨을 거두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역대 정권들이 국보법을 이용한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갈 것이다.

VII. 결론

국보법은 지금까지 정부를 비판하고, 권력과 자본에 도전하는 어떠한 부문도 파괴시키는 위력을 발휘해 왔다. 다시 말해 국가사회의 발전, 문명·문화사회건설을 위한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국보법이다. 미국의 50년대 암울한 매카시즘을 남한에서는 국보법으로 조

작해 내고 있다. 국보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진보, 그리고 통일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 누구도 향후 21세기를 선진문명, 문화사회로 우리나라를 바꾸고자 하는데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사상과 언론, 양심과 도덕, 심지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국민의 인권과 인격을 말살하는 국보법이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모든 국가기관도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국보법으로 현재 감옥에 있는 장기수를 포함하여 양심범, 정치범들은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며, 이전에 국보법으로 인권과 인생을 희생당한 사람들을 즉각 사면하고·복권하고 그 희생에 대한 배상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현정권이 개혁정권이니 문민정부가 아니라 바로 5·6공보다 더욱 교묘하게 인권탄압, 인권말살을 일삼고 있는 민간독재정권, 민간파쇼정권임을 알고 이 정권의 퇴진을 위해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의 양심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

지금이라도 현정권이 국헌에 대한 의무, 인류보편의 인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즉시 국보법을 포함한 모든 반민주악법을 즉시 폐기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의 권익을 유린해 온 노동관계법의 개악을 즉시 포기하고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에 맞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수용하는 한편,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정은 정의로운 국가사회와 복지경제, 노동과 자본이 협력하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도입되어선 안되는 것이다.

국보법이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는 법자체라기보다 이 법을 활용하고 있는 일정한 사상집단과 정치경제세력에 의해서이다. 국보법은 19세기와 금세기초 중반의 유럽과 50년대의 미국과 같은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야만사회로 우리 사회를 묶어두려고 하는, 인간의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독재정권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보수수구집단, 이들의 경제적 후원자인 독점재벌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한민중의 삶을 후퇴시키는 이러한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사회는 여전히 국보법과 안기부가 통제하는 암흑시대로 남게 될 것이다.

별첨

검찰은 '한국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여름휴가가 「피크」인 지난 8월 3일 검찰은 갑자기 경남 진주에 소재하는 경상대학 교수 9인이 공동집필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이 대학 정규 교양과정의 교재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물로 단정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조치는 당사자인 집필교수들의 즉각적인 반발은 물론이고 대학과 학계 등 지식인 사회의 엄청난 비난과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그 교재가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강조하거나 선동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필자들은 즉각적인 반박성명서에서, 검찰의 주장이 “책의 내용을 거두절미하여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는 상식으로 되어 있는 이론에 대해 문외한으로서 재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 성명서는 교재의 기본적 입장이 검찰이 재단하는 것처럼 계급투쟁을 통한 폭력적 혁명이라는 우리사회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과제를 설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역사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데에 있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또한 검찰의 주체사상 옹호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오히려 우리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남한사회를 분석하는 개념이나 규정을 책에서 직접 비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의 중에서도 주체사상에 비판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학과 학계에서도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공안당국의 주장이 학문적으로 볼 때 전혀 타당하지 않은 ‘트집잡기식’ 억지 논리이며, 그 교재의 내용 어디에도 폭력혁명이나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 없으며, 더구나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철저히 과학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계는 물론 각계 지식인들의 교재내용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대표적으로, 학술단체협의회(8월 5일 성명서발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8월 6일 성명서발표), 국립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등 학계, 문학계, 예술계, 출판계를 망라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8월 9일) 등의 성명서에서 한결같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단체뿐

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학교수들과 학술단체, 지역교수단체에서 잇달아 사법당국의 처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인천·경기 민교협도 지난 8월 18일 검찰의 입장과 경상대의 폐강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학교수들을 위시한 지식인들이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검찰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는 첫째 이유는 과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상대의 그 교양강좌가 개설되었으며 이 강좌를 위한 교재가 바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것이다. 이 강좌가 개설된 89년 당시 교육부의 방침에 의거 대학의 자율화, 민주화의 일환으로 국책과목인 ‘국민윤리’를 정리할 때, 교양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경상대를 위시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한국사회의 이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강좌를 개설했던 것이다. 그 교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이해」는 대학생들에게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초보적인 수준에서 균형있게 쓰여졌다. 다시 말해 새로운 교양강좌는 군사독재에 국민이 벌벌기는 ‘윤리아닌 윤리’를 가르친 국민윤리에서처럼 일방적으로 우리사회가 문제가 ‘없는’ 사회인 것이 아니라 역시 문제도 ‘있는’ 사회란 것도 동시에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민주시민의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데 있다.

사회가 어떠한 이념적, 정치경제적 체제를 취하든 간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입장은 체제개혁과 사회발전에 일정하게 순기능의 역할을 했던 역사적 사실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부차원에서 판단하는 검열이나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차원에서 오히려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념이 바로 김영삼대통령이 보름전인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치사에서 수차례 반복했던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불법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각계각층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의견과 권익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이념이요 이를 뒷받침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이와 같은 정신에 따라 우리네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은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 위헌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원한 사법당국이 「한국사회의 이해」를 문제삼는 것은 바로 불법부당한 국가권력의 행사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필자는 이런 거창한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적어도 담당검사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그대들은 한국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한 학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한국사회의 이해」는 지난 80년대부터 지금 까지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진보적 학자간, 그리고 보수와 진보학자간 논쟁과 토론을 거쳐 공인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이 창호

경상대학교 교수

1. 머릿말

지난 8월 중순 5,500여명 연행, 482명 구속이라는 사상 최대의 희생을 가져온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불어닥친 공안탄압의 바람은 9월 중순에 터진 북한 잠수함 좌초사건에 편승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어져 왔다. 검찰과 경찰은 소위 좌익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하에 대학생들의 과거의 행적을 문제삼아 크고 작은 조직사건을 만들어내어 무차별적으로 학생운동 등 재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공안탄압은 사실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이미 금년초부터 농민동맹사건(96. 1.), 민민학련사건(96. 1.), 민정련광주지부사건(96. 1.), 사노맹재건사건(96. 2.), 노나매기사건(96. 2.), 사회주의학생연합사건(96. 3.), 애국동맹사건(96. 4.), 노동청년연대사건(96. 4.), 전학련사건(96. 5.), 나라사랑청년회사건(96. 5.), 해방노동자동일전선사건(96. 5.), 범민련사건(96. 6.), 전주대단기학생동맹사건(96. 6.), 남총련자주대오사건(96. 6.), 21세기진보학생연합사건(96. 7.),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사건(96. 7.) 등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운동에 대하여 다양한 조직사건을 양산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총련 사태가 발생하였고, 뒤이어 계속 광풍처럼 공안의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대 애국청년 선봉대사건(96. 9. 5), 진관스님구속사건(96. 10. 1),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사건(96. 10. 7), 서총련 중앙집행위원회구속사건(96. 10.), 남총련 민족해방군사건(96. 11.) 건국대 충주캠퍼스 노학연대 실천단사건(96. 11.), 강원대 자주대오사건(96. 11.), 경상대 활동가조직사건(96. 11.) 등 크고 작은 조직사건이 계속하여 터져 나왔다. 또한 이러한 조직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공안권력에 의한 탄압이 법치주의의 틀마저도 벗어난 치졸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공권력의 집행은 엄정한 법과 별차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사

태의 일방적 호도로 미혹된 여론을 등에 업고 초법적인 법집행까지 감행하고 있다. 동국대 신문에서 학생들의 낙서를 보도한 경우를 구속하는가 하면, 천리안 통신공간에서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문제삼아 통신인을 구속하고, 현대판 '분서갱유'라 할 수 있는 합법출판물에 대한 판매금지 등의 탄압을 하는가 하면, 문화행사 중심의 노래공연이나 심지어 인권영화제마저 각종의 물리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국가안전기획부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까지 개악하려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다. 과거 인권 유린의 대명사로 불리어 왔던 안기부가 1994년 법개정시에 폐지하였던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의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안기부의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움직임은 실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반민주적 발상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또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 허가제로 개악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까지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하여 "신법의 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해석하면 그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이 제거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보수성과 한계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보수회귀의 공안국면을 바라보면서 공안탄압의 근원적 뿌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근원적 뿌리는 물론 국가보안법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1조 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정부는 항상 자유민주체제의 방위를 위하여 국가보안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은 이 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방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공안탄압은 오히려 과거 유신시절의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행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그 운용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 법임을 논증하고, 그 폐지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2.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라는 미명하에 국가보안법의 미친 칼이 난무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저들이 그렇게도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자유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의 관계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범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것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측면과 규범적 이념형으로서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임의적 구분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 일뿐이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항상 기존의 비민주적인 지배체제를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의 상대적 자립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적 실질을 파악할 수 있다.

규범적 요청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념이고, 나름대로 그것이 지향하는 이념형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도출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당위적 목표이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직도 어느 측면에서든 간에 자유민주주의의 확보라는 요청이 유효하다. 현재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요구가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전술적 목표로서 승인해야만 할 것이다.

1)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란 상품생산과 교환이라는 경제적 토대를 가지는 자본주의사회의 상부구조인 정치제도에 붙여진 호칭으로서 국가권력의 본질을 법치주의의 형식으로 은폐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나라들에서 시민혁명이나 혁명운동의 과정에서 확립된 이데올로기로서 산업자본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지향하는 내용과 역사적 뿌리가 다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된 이념이며, 부르주아지 계급의 지배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시키는 정치 형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접목이 되어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유럽 노동자계급의 운동이 노동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파업권)의 쟁취투쟁과 정치적 활동의 자유요구투쟁으로 발전되어지면서 부르조아 계급은 보통선거권이 확립되면, 부르조아의 권리, 특히 자본주의

적 사유재산권 및 생산과정에서의 자본 착취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위험이 존재했으므로 보통선거권의 도입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격렬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대립을 거치면서 점차 노동3권을 보장하고, 선거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노동자 계급에 부르조아와 동일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가 있음을 발견한 부르조아 계급이 선거권의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이 확보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최선의 민주주의 체제, 인류의 이상에 합치하는 최상의 정치체제로 주장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한 부르조아의 지배는 한편으로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와 함께 기능한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이란 구성원의 보편적 이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은 사회현실에서 자유롭고도 독자적인 논리체계에 따라 형성되며, 독립된 법원에 의해 중립적으로 해석·적용되는 것이고, 정치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은 필수불가결하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와 결합된 법치주의이데올로기이다.

시민계급은 국가와 법에 강제력을 부여하면서도 자유로운 상품교환의 자유, 즉 자유로운 영업권을 국가로부터 확보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로 나타나고 국가와 법은 중립적 존재로 포장된다. 여기서 자본주의 = 자유민주주의 = 법의 지배라는 근대적 세계관이 성립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에 직면하여 이러한 이념은 체제방어 내지 정당화 논리로 왜곡·굴절되어 간다는 점이다.

독점자본의 형성은 공황이나 만성적 불황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경제관리는 전면화된다. 통제법 즉 재정법·세법·공기업법의 전개, 사기업의 결합 및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그 예이다. 국가의 개입은 당사자의 소송제기에 의해서 비로소 발동되는 자유주의 국가의 소극적 간섭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적극적 개입으로 공법영역의 확대를 가져온다. 이렇듯 전시통제경제로 성립한 국가의 개입은 평시에도 전용되고 현대자본주의의 일반적 체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산업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자유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 국가'의 '관료적·군사적 국가'로의 이행을 초래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사기업적 경제적 착취에 대신해서 관료제국가 = 산업적 복합체 전체에 의해 실시되는 경제적 착취로 나아가게 되고 경제부분에서의 개입은 정치부분에서 치안대책차원의 강력한 억압정책으로 나타난다. 사회부분에서의 국가개입의 증대는 자율적인 개인생활영역의 축소를 놓고 이같은 현상과 맞물려 정치부문의 억압구조가 증폭되면서 전통적 자유민주주의는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등장하게 되는것이 전체주의 혹은 방어적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2) 규범적 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상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전체주의적 본질이 항상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 사회에서는 그 규범적 측면을 고려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내용을 규범적 측면에서 확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 기초하여 행해지고 있는 현재의 공안탄압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자본주의시대의 자유민주주의이데올로기가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 소위 전투적 민주주의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규범적으로 볼 때 비록 전투적, 방어적 이데올로기로서 전환된 이후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더욱 강화한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축소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민주주의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정식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적은 바로 전체주의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적 원리의 핵심은 결국 민주주의의 원리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단히 논란이 많은 개념이지만 보수적 법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념적 기초로서 자유와 평등이다. 둘째,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셋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넷째, 대의제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다섯째, 법치주의에 의한 법집행과정의 통제, 여섯째, 세계관에 있어서 가치상대주의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은 상식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범적 의미가 항상 왜곡되어 왔기에 여기서 우리는 그 규범적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기로 한다.

- (1) 국민주권의 원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정치현실에 있어서 기껏해야 몇 년에 한번씩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규범적 측면에서 볼 때 끊임없이 확대되어져야 할 원리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실제로 국민주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다수 국민의 존재에 의하여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다시 말해 현실의 법과 제도로 주권자의 지위를 제약당하고 있는 계층 즉 민중들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민중의 정치권력에 대한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민중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불온시되고 있고, 나아가 민중의 사상의 자유, 민중의 정치활동을 위한 결사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크게 제약하는 반민중적 법이자 반민주적인 법인 것이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또한 민족국가의 바깥에 있는 외부세력 즉 외세의 지배로 인한 제약도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는데, 이 주권이 제국주의의 국내시장 지배 차원에서 제국주의에 의해 제약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주권침해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계층 또한 민중들이다. 또한 외세의 간섭이 국민의 주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은 남북분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외세를 배격한 자주적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모든 노력 또한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반자주적 반통일적 반민주적인 법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2) 다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살펴 보자.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념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전면적인 자유민주주의가 나치스의 전체주의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경험에서 2차대전 후 서독연방 기본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등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 규정은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방어적 내지 전투적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체로 현재 보수적 헌법학자 및 대법원의 판례는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서독연방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의 관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헌법학자인 김철수 교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민주적 기본질서로 나누고, 전자에는 기본권 존중, 국민주권, 권리분립, 정부의 책임성,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기본권의 존중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전체주의적 제약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국가권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국가보안법을 존치하고, 그 법으로 다양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 까닭은 국가권력 자체가 전체주의적 성향을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수 국민의 안정적 지지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

과거 근대사회는 물론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30종류 이상으로 형법에 비하여 가중하여 확대규정하고, 신체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의 일반규정보다 장기간 연장시킬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를 미리 예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과는 멀어져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실제 운용에 있어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인간정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체주의적 법운용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3) 세째로, 대의제의 원리를 언급하기로 하자.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는 물론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마치 직접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간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 또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파생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가 모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민주주의의 요구 자체는 보다 더 큰 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는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투표, 총선거,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은 바로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적 표현이다. 그런데 국민주권주의에 보다 가까운 직접민주주의의 원리는 이러한 제도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다양하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직접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고무 찬양 동조하는 행위는 일정한 의사의 표현을 전제로 한 규정들이다. 그런데 실제 국가보안법의 운용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매우 자의적인 방법으로 해석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적어도 절반은 봉쇄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에 대한 표현은 아무리 그것을 중립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찬성 아니면 반대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들 대의제 민주주의를 의회제로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드시 의회제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대의제의 원리는 대표관계의 정당한 구성과 유지, 공개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국민의 의사가 전반적으로 보아 대표들에 의해서 적어도 비례적으로 공정하게 반영될 때에 정당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전제는 선거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일반적인 정치과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토론이 각종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하여 보장될 때에만 가능하다.

한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은 다수결의 원리로 표출된다.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의 의사 를 무시하는 원리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자와 소수자의 공존의 원리이다. 절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정지울 수 없는 불완전한 사회에서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의 의사가 잘못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해서 소수자를 다수의 편으로 견인하는 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견해가 배타적인 경우에는 다수자의 의견을 소수자가 따라야 하지만, 다양한 견해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수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원리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 경우에도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소수자는 축출되고 결국 다수자는 없고 모두 함께

멸망하는 도리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보안법을 보게 되면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너무나도 소수자 내지 이단자를 배제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으로서 기능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아니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추상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은 법해석의 여지를 떠나서 원리상 이미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좀 더 진실하게 차라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체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아니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돈과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로 자신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할 수는 없을까?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제로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3.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점

1) 국가보안법의 태생적 무효

국가보안법은 자본주의의 이식,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의 필요성, 반공이데올로기의 유지가 결합되어 1948년 12월 1일 그 저주스러운 탄생의 눈물을 뿐였다. 이 법은 사사오입 개헌 이후 위기에 처한 이승만정권에 의해 1958년 12월 24일 경찰이 동원된 가운데 개악이 되고, 4.19혁명에 의해 탄생된 제2공화국하에서 불고지죄가 신설되었다. 1980년 5.17군사쿠데타 세력이 주도하는 '국가보위법회의'에서 박정희 시대의 반공법을 통합해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을 제정한 '국가보위법회의'는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 정당과 국회가 해산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도 폐지됨에 따라 헌법 부칙의 수권규정으로 임시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특별의회'였다.

입법회의의 성립과 구성의 문제점은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났다는 점이다. 그 당시 상황이 긴급을 요하는 비상사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는 소수(80인)의 입법회의 의원들이 입법권을 전단적으로 행사한 것은 권리분립의 원칙과 대의제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제정 또는 개정된 수많은 다른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해 형식적으로 수권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법회의에서 전면개정된 국가보안법은 당연 무효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특히 5·17을 쿠데타로 인정한다면 더욱 당연한 것이다.

2) 국가보안법의 존립기반의 붕괴

국가보안법의 가장 핵심적인 존립기반은 제2조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이다.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면 동법은 더 이상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그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시대에 있어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자기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법적 규범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국제법적으로나 국제정치적 의미에서나 법내재적 논리로 보더라도 엄연한 하나의 주권국가임에 틀림없다.

우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상 영토조항의 국제법적 근거로 알려진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총회 결의는 사실은 단독선거가 실시된 38선 이남 지역에서만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한 것이며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한미방위조약과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남한지역에 대해서만 합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정부이고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된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이미 이를 받아들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유엔가입은 다시 한번 북한이 합법적 주권국가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이 미치는 지역을 불법점령하고 있는 불법단체로 보는 것은 최소한 법리상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 전문과 제4조, 제66조 등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평화통일정책이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한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 헌법이 평화통일 정책을 선언한 것은 하나의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면 평화통일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진압과 영토의 수복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규범인 헌법의 위 조항에도 위배된다.

한편 유엔헌장 제4조에 따르면 유엔 가맹국의 자격 조건은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서 유엔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평화 애호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먼저 북한의 유엔 가입만으로도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는 변화하였다. 즉 북한은 더 이상 국가

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로 국제적으로 승인되었으며,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가 아니라 당연히 정부를 '칭'할 수 있는 '국가'인 것이다. 그리고 유엔 회원국의 자격이 '평화 애호국'이라고 할 때 북한의 남침 위협을 운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논리는 이제 설 땅을 잊게 되며, 그러한 법의 대표적 예인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각각 주권국가로 인정된 이상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나 발언이 다른 주권국가를 이롭게 한다고 처벌할 수 있다면 예컨대 미국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나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으로 규제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3) 국가보안법의 내용상 문제점

북한이 '반국가단체', '적'이 아니고 '평화애호국' 내지 '국가'임이 인정된 이상 기타의 국가보안법 상의 조항 모두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제3조), 목적수행(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잠입·탈출(제6조), 찬양·고무·동조(제7조 제1항), 이적단체 구성·가입(제7조 제3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제7조 제5항), 회합·통신(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 등의 각종 조항들도 또한 존립근거를 잊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들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괄적으로만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로, 전술한 바대로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에 위배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헌법 제3조와의 관련에서 어느 조항이 우월한가의 논의가 있지만,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은 사문화된 명목상의 조항에 불과하며, 결코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지향하고 선언한 평화적 통일 노력을 국민들에게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적인 법률인 것이다.

둘째로, 국가보안법은 그 구성요건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제2조의 '반국가단체', '정부참칭', '국가변란', 제3조의 '수괴의 임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 제4조의 '국가기밀', '기타 중요시설', '기타 물건',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 제4조와 제7조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 '사실을 왜곡', 제5조와 제6조의 '지령', 제6조의 '협의',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기타의 표현물', 제8조의 '기타의 방법', 제9조의 '기타의 무기',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 국가보안법의 실체적 규정의 대부분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국가보안법의 규정은 행위의 가별성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죄와 형의 균형을 요구하는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이

다. 이러한 죄형 균형의 상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성요건의 확장·유추해석과 결부되어 그 남용의 극치를 이루었다. 최고형이 사형인 조항만도 수두룩한 국가보안법은 잔학하고 비인도적인 법률의 극치를 이루는 반인도적·반문명적 법률이며, 법의 가면을 쓴 적나라한 폭력이다. 그기에 국가보안법은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상의 근본규범에 위배된다.

넷째로, 국가보안법은 학문·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헌법률이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전·선동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한 때에는",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제4항의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유포', 제5항의 '문서, 도서 기타 표현물의 제작·수입·복사·운반·반포·판매·취득' 등의 매우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학문 및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은 반공 및 반북이데올로기를 강요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위헌법률이다. 사상의 자유가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단계에 이를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학설을 용인하더라도 동시에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이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제한의 한계를 일탈할 수밖에 없는 규정인 위의 조항들은 명백하게 위헌이다.

4) 국가보안법 적용절차 상의 문제점

"마치 봉어빵틀로 찍어내는 뽕어빵처럼 정형화된 많은 간첩사건들, 불법연행 뒤의 장기에 걸친 밀실수사, 고문, 굴복, 조서작성, 세뇌, 지령, 그리고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가까운 친구들에게 북한 찬양, 물적 증거의 부재, 검찰송치 후의 검사에게 하소연하리라는 협된 기대, 다시 절망, 이것은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다."(서준식, 국가보안법의 회생자들, 월간중앙 1989년 8월호, 388쪽)

이상의 인용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전형적인 처리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인신구속과 수사절차, 재판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 내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절차상의 원칙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으로써 과행적 적용의 여지를 마련해두고 있다. 과거 단심제, 보도구금제 등의 악랄한 규정들은 현재 폐지되었지만, 현행 국가보안법에도 참고인의 구인·유치제도, 구속기간의 연장, 공소보류 제도 등은 그대로 승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칙 규정들은 모두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들이다. 더

육 심각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적용과정에서 그러한 조항들조차 하나의 장식물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국가보안법이라는 죄명이 붙는 사건인 한 법의 보호와 규제는 전혀 무력해지고 수사기관의 불법과 자의가 무한정 용인되어 왔던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우선 불법연행, 장기구금, 고문이라는 수사절차의 위법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위법한 수사절차는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여 조작하는 결과로 나타나기가 십상이다.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검찰과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도 그동안 이와 같은 수사절차의 위법성의 문제를 규제·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합법화하는 데 봉사해 왔다. 이렇게 하여 조작된 허구가 버젓이 역사적 진실로 행세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을 해친 반역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오랜 구금의 고통과 사회적 냉대를 받아 왔다.

실제 조직사건은 물론 간첩죄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가 조작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가협 자료에 근거하여 그 유형을 찾아보면, 먼저 재외동포가 조국에 왔다 간첩 누명을 쓴 경우, 둘째 유학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일본이나 제3국을 방문했다가 북한인이나 친북한계인사를 만난 것이 빌미가 되어 간첩죄로 처벌받은 경우, 세째 조업중 남북되었다가 간첩죄로 처벌된 경우, 기타 반정부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이 적용된 경우 등이다.

“피고인은 자인 바, 북한 공산당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나라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군사파쇼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종속된 신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모략하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 해방을 위하여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 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정권, 매판 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름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지난 48년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거의 모든 피고인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문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허구에 찬 논리에 기초하여 국민을 옮아매는 데 악용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4. 맷음말

국가보안법은 현행 헌법이 보장한다고 규정한 제반 기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 마저도 유린함으로써 자기모순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제반가치들이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질식당하고, 그로 인하여 각 계층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전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함으로써만 꽂힐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궤변이요 억지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꽂피우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 쪽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민족의 통일은 7천만 겨레의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이다. 그러나 50년의 장기적 분단과 극한적 대립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문제는 지극히 혼난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기에 통일문제는 전국민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져야만 할 사항임에도 바로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그러한 자발적 노력들이 차단당하고 심지어 가혹하게 처벌되기까지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바로 민족통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은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끊임없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이다. 통일을 통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또한 다수 국민들의 폐지요구가 줄기차게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고집하는 세력이 우리사회의 정치·경제부문에서 아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항상 무언가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다. 한마디로 그들은 바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 기득권세력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가장 비자유주의적이고도 비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다수 국민들의 정당한 불평과 요구를 압살하고 사회개혁의 기회를 차단하고 현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밑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국민들의 요구들을 틀어막아 부당하게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영원한 존속을 바랄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이다. 문제는 누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데 앞장 설 것인가이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그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는 바로 그 존재로 이익을 누리는 소수의 기득권세력을 제외한 전체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의 잠재적 피해자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기능은 원천적으로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국가보안법체계를 운용하는 공안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과 인력을 국민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면 우리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풍요로울 수 있을 터인데,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법이 얼마나 전체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인권과 사회의 정의에 관심있는 양심적인 지식인이라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위대한 계몽사상가 블테르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음미하면서 끝내기로 한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

소위 문민정부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한 택 근
민변, 변호사

I. 서 론

1993. 2. 25 김영삼 정부(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따른 폐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으나 결과는 전혀 반대였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자 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이는 이전에 비하여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김영삼 정부의 본질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1~7월)
구속자 수	305	122	367	246	201

(96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104쪽)

이하 소위 문민정부출범 이후 각종 국가보안법 남용사례를 연도별로 살펴 보기로 한다

II. 연도별 남용사례

1. 1993년의 사례

소위 문민정부출범후 상반기에는 이전에 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공안당국에 의한 인신구속이 늘어나기 시작하였

는 바 점차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문민정부 발족 이후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된 공안당국의 자리보전을 위한 남용의 경향마저 떠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1993, 인권보고서 제8집)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경찰은 조국교수등 10명이 1990년 8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구속하였다. 특히 조교수는 국가보안법연구등 진보적인 범학연구를 해오던 이로서 사노맹 총책(백태웅)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과, 『우리사상』 1호 발간에 잠시 기획 자문을 해주었다는 사실, 사과원에서 그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관련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구속한 것이었다.

한편 검찰은 8. 11 조국 교수등 7명에 대하여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 되었으나, 이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일부에 대하여 반국가단체구성·가입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적단체구성·가입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기소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음을 인정하였다.

노태훈씨 사건

검찰은 1993. 8. 11.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 상근간사인 노태훈씨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소지혐의로 기소하였다. 노씨는 일본에서 열린 '한국양심수 서화전'에 관여하였는데 처음 경찰에서는 노씨를 조총련과 연계된 반국가단체조직혐의로 연행, 조사하였으나 이에 대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자 노씨가 장기수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된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라는 책자 및 장기수 김도한씨가 지은 시조집 『옥중일월』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93. 10. 20.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소지죄를 적용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러한 행태는 이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컴퓨터 통신에 대한 탄압

1993. 11. 18. 대검 공안부는 데이콤의 컴퓨터 통신망 '천리안'에 게재된 '현대철학동호회'의 일부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게시한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서울경찰청은 12. 8. 위 동호회 회장 김형렬씨를 구속하였다.

한편 서울형사지방법원 9단독(재판장 유우열판사)은 1994. 5. 10. '피고인 김형렬이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게재한 사노맹관련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를 인정하였다.

이후 공안당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컴퓨터 통신에 대한 검열 및 인신구속을 자행해 오고 있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항소 5부는 1995. 5. 17. 컴퓨터 통신 천리안에 '공산당선언'을 일부 게재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진상호씨에 대하여 "공산당선언 내용은 도서관 자료실이나 일반서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줄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타 조직사건

12. 7.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건 : 7명 구속

12. 17.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재건기도 사건 : 민중정치연합회원 8명 구속

2. 1994년의 사례.

1)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에는 상반기부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신구속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출판사 탄압

1994년 한 해동안 출판사 탄압이 부쩍 늘었다. 구속된 출판인 수가 1991 - 3명, 1992 - 1명, 1993 - 3명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8월까지 도합 8명이 구속되었다.(경찰청, 94국감자료)

출판사	출판인	구속일	서적
일빛출판사	대표 이성우	1994.3.19.	'강의 노동자의 경제학'(1990.5.), '강의 노동자의 철학'(1990.8.) 등 5권,
힘출판사	대표 김연인	1994.3.23.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1990.10.), '90년대 도약 청년학생운동'(1990.3.) 등 7권,
도서출판일터	편집부장 박치관	1994.4.20.	'용해공들'(북한소설)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	1994.6.10	레닌의 '제국주의론' (1987.12) 등 4권
도서출판가서원	대표 이희건	1994.8.20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회고록)
도서출판살림터	대표 송연현	1994.8.30.	'벗'(북한소설)

이상의 책들은 대부분 3~7년전에 출간된 책들로서 이전 군사정권하에서도 구속에 이르는 문제로까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문민정부하에서 새삼스레 문제삼은 것이다. 이와 같이 출판인들을 구속하면서 당국이 내세운 근거는 군사정권시절인 1989년에 작성된 '대검분석 이적도서 목록'이었다는 점에서도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용인가를 보여준다 하겠다. 한편 당국의 이러한 출판인 구속조치에 대하여 국제펜클럽 산하 옥중문인위원회는 1994. 4. 19. 김영삼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출판인들의 구속은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한겨레신문, 1994. 4. 25.)

한편 북한소설『용해공들』을 출판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항소부)은 1995. 4. 21. 소설『용해공들』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인간상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내용은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이 소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위협할만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도 들어있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서울지방법원 94노 4599) 위와 같은 인신구속이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위 책자들 중『세기와 더불어』를 판매한 혐의로 긴급구속된 인서점 대표 심범섭씨에 대하여는 법원이 1995. 7. 21. 과 7. 25.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하였다.

희망새, 노민문연 사건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예술활동의 영역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우선 경찰은 1994. 2. 21 밤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노래극단 희망새 대표 김태일씨등 3인을 연행하였다. 당시 경찰은 희망새가 1994년 전국순회공연 예정인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이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이유로 연행하였다고 밝혔으며, 이후 경찰은 3. 24, 17:30경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희망새의 단원등 6명을 추가로 연행하였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6. 15.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 희망새의 단원 허명순, 안성혜, 최경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아울러 서울형사지방법원은 6. 29. "김씨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을 통하여 북한의 혁명가요등을 소개하려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희망새 대표 김태일에게 징역 2년, 단원 이윤정에게 징역 1년 2 6월, 단원 조재현, 이창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경찰청은 9. 27. 새벽노동자민족문화 운동연합(노민문연) 단원 8명을 연행하였다. 노민문연은 구로, 중부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공개 문화단체로 문화학교, 풍물, 노래교실 등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특히 구속된 자들 중 이철우씨 등은 이미 2년전에 활동을 그만 둔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구속자 및 가족들은 정부가 공안정국 분위기에 편승하여 문화예술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한편 1994. 7. 8. 김일성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후 사회 일각에서는 김주석에 대한 조문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부영의원은 7. 11. 개최된 임시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이 앞으로 한반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바탕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와 "북한 권력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 일각의 양해가 성립된다면"이라는 두 가지 전제 아래 "우리쪽에서 조문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뜻이 없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대부분의 언론들은 마치 조문론=추모론이라는 등식과 함께 조문론자들을 김주석 흠토론자들인양 간주하며 여권 및 보수파들과 함께 소모적인 사상논쟁을 부채질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조문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런 가운데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은 7. 18. 난데없이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과 사로청이 있고,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며 학생들을 매도하자, 각 언론들은 마치 숨겨진 진실이라도 폭로된 양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주사파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온 시점에서 김일성 사망이후 애도문제를 둘러싸고 박총장발언이 나온 것은 시대적 요구의 한 표현" (동아일보 1994. 7. 22. 사설)이라고 하는 등 이를 치켜세우기에 나섰고, 이러한 보도들은 이를 빌미로 정부가 학생 및 재야단체들을 탄압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결과를 냉았으며, 이후 메카시즘 선풍, 마녀사냥 등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신공안정국이 형성되었다.

조문관련 구속

7. 1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강재우목사와 간사 안희만씨가 김주석 조문을 가기 위해 판문점으로 향하던 중 경기도 고양시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한편 전창일, 이종린 부의장, 강순정 서울시연합 부의장 등은 단순히 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섰다가 함께 구속되었다.

7. 18.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교정에 "김주석의 사망을 민족화합의 대의에서 애도하며 남북정상회담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부회장 최인규가 이적표현물제작혐의로 구속되었다.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7. 27. 진주시 우리서점 대표 정대인씨가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고 아울러 당시 연행과정에서 경상대학교 교양과정 교재로 사용되던 『한국사회의 이해』 13권이 압수되면서 소위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비록 정대인씨는 다음날 바로 석방되었지만, 며칠후인 8. 2 최환 대검 공안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익명을 요구하며 대학교양교재의 내사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라디오 및 TV가 이를 보도하고, 다음날인 8. 3 일간신문이 이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한여름 신공안당국은 그 절정에 달하였다. 당시 공안당국의 설명은 경상대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9명이 1990년 집필하여 4년간 대학교양교재로 사용되어 오던 『한국사회의 이해』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고, 이후 공안당국은 이들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도하면서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한편 이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단회의, 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개 단체는 같은달 9일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같은 공안당국의 처사는 학문·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규정짓고 이를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후 위 위원회 및 기타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소환 및 구인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동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다가 같은달 30일 해외체류중인 백좌홍교수를 제외한 8인의 교수들은 구인에 응하였다. 이후 이들을 구인한 검찰은 같은날 장상환, 정진상 등 2인의 교수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최태룡, 이혜숙, 김준형, 이창호교수는 불구속입건하고, 김의동, 송기호교수는 수사 종결하였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담당판사 최인석판사)은 같은달 31일 검찰의 2인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1. 30. 장상환교수, 정진상교수 등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준형, 이혜숙, 이창호, 최태룡교수 및 도서출판 지이대표 임경숙씨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 해외체류중인 백좌홍교수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이창복씨, 황인성씨 구속사건

서울경찰청은 8. 9, 8.13.부터 8.15까지 열릴 예정인 제5차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범민족대회 남측본부 공동본부장 이창복씨와 범주본 집행위원장 황인성씨를 긴급구속장에 위하여 구속하였다. (법원으로부터의 구속영장은 연행후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부받았음) 이후 서울지검 공안2부는 1994. 9. 6.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2. 9. 선고 94고단 6459)

당시 문제로 된 표현물의 내용은 우리정부를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예속정권이라 하였고, 연방제통일방안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해체,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인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1995. 4. 6. 피고인 이창복의 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이런 표현행위에 대하여 관용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용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향유하기 위하여 치루어야 할 대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1 형사부 1995. 4. 6. 판결 95노8)

3. 1995년의 사례

공안당국은 연초부터 6. 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조직사건을 통하여 무더기 구속을 하였는데 이 사건들의 공통된 특징은 구속된 이들이 대개 학생회 활동을 하다가 중지하거나 운동을 정리한 이들로서, 구속당시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었다. 게다가 이들 사건의 경우 구속당시에는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내용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이었다가 대부분 이적표현물소지나 고무찬양혐의로 축소되어 기소되었고, 한 사건에서 1~2명을 제외하면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국가보안법사건은 공안당국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속에서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건을 부풀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각종 조직사건

- | | |
|-----------------------------|----------|
| 2. 14.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 14명 구속 |
| 3. 17. 경기대 자주대오 사건 | 13명 구속 |
| 5. 30. 전남대 민족사랑 연합회 사건 | 3명 구속 |
| 원광대 자주대오 사건 | 4명 구속 |
| 6. 9. 남한 프로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사건 | 15명 구속 |
| 10.18.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 12명 연행 |
| 11.17.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 7명 구속 |
| 11.21. 진보정치연합 | 13명 긴급구속 |

김무용씨 사건

경찰은 1995. 3. 23. 한국방송통신대 역사학과 강사 김무용씨를 과거 빨치산의 활동에 관한 글 등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김씨는 역사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빨치산 역사기행'이란 자료집에 '빨치산 활동이 어떻게 되었나'라는 연구결과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 글등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였다는 것이다.

부여간첩 김동식사건 (불고지죄 사건)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전국이 들끓던 10. 24. 간첩 김동식이 부여에서 고정간첩과 접선하려다 발각되었다는 남파간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1. 6. 이인영, 우상호, 함운경 등이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3인 중 우상호씨는 11. 10.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으나, 나머지 2인은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음) 이후 허인회씨에 대하여도 같은 혐의로 11. 10.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허씨는 특정 정당 활동을 하는 이로서 이 사건이 다음해 총선을 의식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하였다. 한편 허씨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9단독, 재판장 유원석)은 1996. 11. 8. 허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박충렬, 김태년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1995. 11. 15.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김태년(성남 청년단체 미래위원장)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다.

박충렬씨의 경우 구속영장기재 혐의사실은 "1989. 일자불상경 … 장소불상 모다방에서 … 성명 불상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 내용불상 교육과 지령을 받고 … 내용불상의 보고를 했다." 는 식의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이후 박씨는 연행된 후 22일 동안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 안재우기(하루 1시간 정도 수면시간 허용), 세워놓기, 무자비한 구타 등의 고문을 받으며 노동당 입당, 간첩활동 사실 및 공작금 4,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받았다. 또한 안기부 수사관은 사용하던 무전기를 찾아내라면서 관악산, 마석 모란공원, 장소불상의 곳 등으로 3일간 끌고 다니며 추운 날씨에 옷을 벗긴 채 무수한 구타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 한편 박씨는 이같은 고문을 못이기고 "나는 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자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박씨는 12. 6. 검찰에 송치되어 다시 30일 동안(일요일 제외) 매일 아침부터 밤 11시 넘어 서까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한편 검찰은 이와 같은 장기간의 조사를 했음에도 박씨에

대한 간첩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회합, 통신 혐의를 제외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9단독)은 1996. 7. 12. 박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고로 검찰은 박씨에 대하여 징역10년을 구형하였고, 이후 선고기일이 1996. 4. 4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4·11. 선거를 앞두고 박씨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될 것을 염려한 검찰이 재개신청을 하여 재판이 속행되었고, 재판부는 4. 4. 박씨에 대하여 보석결정을 하였음.)

한편 김태년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위를 거쳐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범민련 사건

11. 29. 공안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 및 각 지방조직 관련자 29명(의장 강재우목사, 부의장 이천재, 이종린 등)을 연행하였고,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범민련 활동 자료집등을 압수하였다. 안기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난 91년 11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에도 계속 북한과 연계해 불순 통일운동을 벌여 왔으며 일부 인물들은 국내 정세를 몰래 수집해 재일 조총련등 북한 공작조직에 전파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단체는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그 동안 6차에 걸친 범민족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해 왔고, 북측본부와 주고받은 모든 통신문을 통일원, 동대문경찰서등에 전달해 오는 등 모든 활동을 공개적으로 해왔음에도 새삼스레 갑자기 관계자들을 전원 구속한 것은 노태우 비자금사건을 호도하고, 다음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범민련관계자들은 1, 2심 재판과정에서 범민련의 활동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범민련의 주장내용은 "연방제 통일,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철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위협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 2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4. 1996년의 사례

1) 4·11. 총선을 앞두고 신년초부터 각종 국가보안법 관련 조직사건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각종 조직사건

1. 9. 남한조선노동당재건 기도 사건(애국동맹사건) 7명 긴급구속 … 5명 무혐의 석방(검찰)
- 1.18. 민민학련사건 5명 (모두 현역 군인)

1.20. 민정련 광주지부사건	5명 구속
2. 4. 사노맹재건사건	10명 연행
2. 25. 노나매기 사건	8명 구속 (현역군인 2명 포함)
3. 28. 사회주의 학생연합	11명 구속 (현역군인 4명 포함)

2) 한편 4·11 총선이후 당국은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이 잇달아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시위 엄단”, “좌익세력 척결” 등을 내세우며 공안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후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무차별적 인신구속이 더욱 심하게 행해졌다. 그리하여 4·11 총선 이후 7.11. 까지 무려 12건의 조직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과거 활동을 문제삼은 사건들이었다. 예컨대 애국동맹사건(1992), 해방노동자 통일전선사건(1991) 사노맹사건(1992) 학생활동가 조직사건(1992) 등이 그것으로 이들 대부분은 3~4년전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되어 조직이 완전 와해된 상태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무려 46명에 달하고, 그 대부분은 직장인, 군인, 가정주부 등이었다. (민가협, 4·11총선 이후 시국관련 급증현상에 관한 보고서, 민변소식지 1996.7.)

각종 조직사건

4. 24~25 800만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12명 구속 (2명 불구속)
5. 8. 전학련사건	13명 연행
5. 29. 나라사랑청년회	3명 연행
5. 30. 사노맹재건기도	5명 연행
6. 7. 범민련사건	2명 연행
6. 18~19 전주대 단기학생동맹	5명 연행
6. 26. 남총련 민족해방군	12명 연행
6. 30. 남총련 자주대오사건	13명 구속 (1명 불구속)
7. 2. 21세기 진보학생연합	12명 연행
7. 6. 애국 크리스챤 청년연합	8명 구속 (5명 불구속)

한총련 사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연세대에서 범민련의 범민족대회와 범청학련의 통일대축전행사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행사후 연세대에 대한 봉쇄로 인하여 학생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5,899명이 연행되고 그 중 465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통일대축전행사는 그 동안 6차례 걸쳐서 계속되어 왔으나, 1996년에는 공

안당국이 4·11. 총선이후 계속되는 공안탄압 분위기에 편승하여 초강경진압하므로서 사상최대의 구속자를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편 구속된 학생들 중 대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화염병 사용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당수 학생회 간부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가입,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등의 혐의가 추가되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학생회 간부들 중 대부분은 그 혐의내용이 학생회 간부로서 한총련, 서총련등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이 때에 받은 유인물을 단순히 학생회 사무실등에 보관하였다는 것이었다.

진관스님 구속

안기부는 10. 1.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스님이 범민련 남측본부 결성에 참여하고, 김인서씨 등 미전향장기수 출신 출소자 3명의 북송을 추진하면서,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하여 범민련 해외대표 김병연씨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의 동향과 자료를 전달하였고, 북한사람으로부터 4,000달러를 받았다면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한편 진관스님은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수 송환을 위해 일하던 과정에서 홍보차 전달한 것인지 이적목적에서 행한 것은 아니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진관스님의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이 11. 16임에도 불구하고 5일간이나 불법구금을 하였다가 실질적인 석방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재구속하기도 하였다.

① 한편 1996. 3.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의 권리옹호가 국제적인 이슈로 제기된 마당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하겠다.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사건

경찰은 11. 6~7. 23명을 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의 혐의로 연행하였는데,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팩스는 물론 전화기까지 수거해갔다.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11. 11. 남총련 소속 대학생 27명이 이적단체 가입등의 혐의로 대부분 긴급구속장의 제시도 없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특히 이들에 대하여는 가족들의 면회도 거절되는 등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되었다.

한편 검찰은 김영철씨등 5명에 대하여 27일간이나 구속 수사를 한 후에도 민족해방군에 가입한

협의가 드러나지 않자, 뒤늦게 단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기소유예하였다.

I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의한 대량구속은 소위 문민정부하에서도 항존하는 일로서, 그 남용의 폐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그 남용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둘째, 반정부적인 인사, 진보적인 학자 내지 예술가, 민간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인사, 학생운동가 등에 대하여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할 수 있으며, 특히 그 폐해는 사건을 조작하는 경우에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에 대하여 견제를 하여야 하는 법원 또한 몇몇 예외적인 사례들(예컨대 이창복씨 무죄,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있어서의 영장기각, 박충렬씨등 무죄)을 제외하면 효과적인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세째,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량구속 시점이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각종 조직사건이 터지고 이에 따른 대량구속사태가 일어난다는 점과(예컨대 1995. 6. 2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과 1996. 4. 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많은 조직사건이 발생), 정부가 수세국면에 몰렸을 때에 이에 대응하여 각종 공안사건이 터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노태우 비자금사건이 터졌을 때 부여간첩사건이 발생하고, 범민련 관련자에 대한 대량구속등이 행해짐) 특히 이는 이미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이나, 군복무, 생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과거행적을 문제삼아 인신구속을 자행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를 띠고 있다.

네째,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엄존하며,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섯째,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기간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이 최장 경찰 10일 검찰 20일인데 반해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경우 경찰 20일, 검찰 30일로 되어있으며, 대개의 경우 구속만기를 채우고 기소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간의 구속이 행해지고 있다.(실제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도 구속만기를 채워 기소하는 예가 많음)

여섯째,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조항의 남용이다. 사실 집에 사회과학서적 몇 권 정도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터인데, 일단 공안당국이 이적표현물소지가 아닌 혐의로 인신구속을 행하고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결과 그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적표현물 조항을 걸어 피의자를 기소한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

서 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1.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상황

① '냉전'의 종식은 (특히 구 소련과 동구의 붕괴 이후) 지구적 규모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초래했다. 미국이 그 존재를 위협하는 현실적 세력의 소멸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오랫동안 미국에 종속하여 "공산주의의 침략을 방위"해 온 반공군사독재정권들은 '용도폐기'되어 민간정부들이 이를 이어받는다. 이런 한에 있어서는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와 비판의 자유의 폭이 어느정도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동서간의 상호이해나 화해의 결과 이루어진 것이 아닌 까닭에 여전히 미국에 의한 세계지배구조와 그것에 대한 (군사외적인) 도전이라는 상황은 존재하며 따라서 미국의 군사패권구조나 전략배치에 변화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냉전의 종식'은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국가안보의 법제나 관행이 사라지는 조건을 자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우, 변함없는 분당상황으로 말미암아 '준냉전'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설령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호이해나 화해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테면 '흡수통일'과 같은 형태) 국가보안법이 존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② 희망적인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의 군사적 침략"이라는 현실적 가능성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후퇴하면서 적어도 여러 독재국가들이 국가안보의 법제를 존속시킬 명분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대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서방국가들의 진짜 의도야 어디에 있든)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아시아 나라들의 개발독재와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정부의 경우 93년부터 95년까지 3년임기의 UN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된 데 이어 95년

에 재선되어 그 임기가 98년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3년동안 UN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고문, 자의적 구금 등에 대하여 국제적 NGO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올해 (96년 제52차) 인권위원회에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Abid Hussain씨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특별보고관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 바 있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규범이나 인권기구들이 그 효율성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주관적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아시아에서의 지역 인권보장기구 및 아시아인권NGO회의 (Asian NGO's Congress) 창설논의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해 (답답하지만) 꾸준히 발전해왔다. 세계의 모든 지역에 창설된 인권보장기구가 인권탄압이 극심한 아시아에만 없다는 사실이 앞으로 이 논의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③ 국내에서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조건은 상당히 암담한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공 말부터 6공기간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졌던 국가보안법 존립근거에 대한 회의는 1991년 남북합의서가 채택되면서 거의 절정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구체적이고도 절박하게 느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대통령선거 전의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을 거치면서 냉각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관심은 1994년의 ‘마녀사냥’ 혹은 ‘신공안정국’을 거치는 총체적 보수화의 흐름속에서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 나타났듯이) 거의 돌이킬 수 없이 퇴조해버렸던 것이다. 지난 여름의 소위 ‘한총련사태’는 이 경향에 더 박차를 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9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의 무지막지한 적용이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일반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 소극적 내지 냉소적이 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거대 언론매체들의 대대적인 ‘피해자 매도’가 국민의 의식 속에 깊이 박힌 반공정서를 부채질한 결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호기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기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1980년대 말부터 속속 창립된 대규모 노동, 농민, 환경, 교육, 여성 등등의 재야조직들은 자신의 당면한 과제에 힘을 실으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같은 공통의 과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시민적 쟁점에 힘을 싣지 않을 수 없는 거대 시민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1980년대의 소위 민민운동 혹은 반독재운동세력 상당부분이 이들 여러 부문운동과 시민운동 (그리고 제도정당)에 흡수되어 운동역량의 분산을 결과한 데다가 민민운동을 자처하는 부문운동마저 거대언론에 길들여진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 관심사에 접근해가는 ‘탈정치화’ 경향을 보임으로써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주체는 점점 왜소해지고 고립되어왔다. 일부 시민운동단체 또는 시민운동화한 민민단체들에 국가보안법 남용의 광풍이 불고 거대언론기관들이

피해자 매도에 극성을 떨 때마다 “똥물이 튀기”를 두려워하면서 몸을 사리는 듯한 경향 마저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④ 1988년 하반기에 벌어진 ‘전·이 구속투쟁’과 ‘반민주악법 철폐투쟁’ 사이의 우선순위논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종의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입장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요즘 상황은 이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청산이냐 국보 철폐냐? 을 여름의 ‘한총련사태’를 거쳐 다시 보수회귀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반국가보안법투쟁은 우리에게 물론 절실하다. 그러나 작년 ‘5·18투쟁’의 큰 성과를 제대로 된 과거청산작업에 연결시키는 역사적 과제 또한 절실하다. 과거청산투쟁은 아직도 호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보철폐(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호기라고 할 수 없다면 국보철폐에 총력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과거청산국민위원회 결성준비작업은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장에서의 약간의 회망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호의적인 조건은 아무데도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국제적인 장에서의 국보철폐운동이 잘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의 어느 정도 규모의 성공적인 국보철폐운동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갑갑하게 만들고 있다.

2. 1990년대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그 반성

여기서 1980년대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언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지금 우리의 국가보안법 철폐전략을 생각하는 데 검토가 필요한 시기는 1990년대, 특히 1992년 이후의 철폐운동이다.

이 시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조직을 파괴당하는 이른바 ‘민중·민주계열’의 자구적인 노력으로서 꾸준히 전개된 부분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역시 통일운동과 더불어 융성했다가 탄압 받는 통일운동과 더불어 고립되어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의 『국가보안법연구』와 같은 본격적인 저작이나 대중성을 획득한 평론들이 쏟아져 나왔던 80년대 말, 90년대 초와 달리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관한 이렇다 할 글도 나오지 않게 된 것은 이 시기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졌음을 잘 나타내는 현상이라 하겠다. 우리는 지금 이런 맥락 위에 있다.

① 상설적 연대기구운동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국보철 범투본]은 1992년 4월에 결성되었다. (결성식에는 7~8백명 참가) 23개 단체가 참가했지만 전국연합 같은 연합조직도 한 단체로서 참가했기

때문에 실체 가입단체는 상당히 많은 수가 된다. 남북합의서 채택이라는 정치적 조건을 배경으로 결성된 것이라든지 김명식이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에 잘 나타나듯이 그것은 통일운동과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고 서울구치소 앞 집회(200명), 92년 여름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 석방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이것을 민가협이 이어받고 지금도 해마다 하고 있다), 남북합의서 발효 1주년을 기한 1,000인 선언 조직 등의 활동은 폭넓게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의장이었던 김낙중이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에 연루되고 암수수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집행위원장과 실무자가 항시 독립된 근거지에 상근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었고 그 당시 분위기에도 양심적 중간층까지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공안탄압 종식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모임'은 1994년 6월의 노동자대탄압과 7월의 소위 '조문파동'에 뒤이은 '신공안정국' 과정에서 피해입은 14개 단체가 모여 1994년 10월에 결성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공대위'라는 형태의 운동방식에 대한 회의가 널리 퍼져 있어 예를 들어 민가협 같은 중요한 단체는 참가하지 않았다. 참가 단체들이 이 '공동대책모임'을 1995년 2월까지의 한시적 공동기구로 하는 데 동의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계 지도적 인사 1000명 명의로 된 선언, 탑골공원 집회(약 900명) 등의 활동이 있었다.

*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민운탄 대책위]는 1995년 11월 말에 19개 단체에 의해 한시적 조직으로서 결성되었으며 노동소위, 빈민소위 그리고 국보법철폐 소위를 가지고 있다.(대표 백기완, 강희남) 범민련사건, 노운협사건, 이덕인씨사건 등이 결성의 배경이므로 이 역시 탄압에 대한 대응이라는 형태로 조직되었다. 국보법철폐소위의 활동은 지난 7,8월에 약 1주일의 캠페인기간을 정하고 가진 심포지움, 거리선전, 집회(약 200명) 등이 있다.

노동운동과의 연대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좌파의 전선조직이라는 외부인식 때문에 광범위한 단체들과의 연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민가협의 활동 및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실천해온 탑골공원 앞 목요집회가 150회를 넘어서 있으며 해마다 여름에 명동성당에서 하는 농성과 '감옥체험'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가지 참신한 운동방식을 채용하려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 양심수라는 주제의 성격상 일반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많은 문제점이 장기수, 양심수문제의 그늘에 가리워져 충분히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때 열렸던 국가보안법 심포지움의 후

속조치로서, 그리고 해방·분단 50주년 기념행사로서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비롯한 17개 인권관련 단체에 의하여 기획되었다. 해외에서 40여명의 쟁쟁한 인권운동가와 학자들이 참석하는 등 한국사상 최대의 국제인권회의였다.

이 대규모 심포지움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주는 잠재적 가능성은 크다. 특히 이제 까지 ~~국내에서~~ 가장 취약했던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국제전략을 모색하고 그것을 가능케하는 환경을 일정하게 조성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국제전략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핵심 단위의 부재 및 외국어실력과 국제감각을 갖춘 혁신적인 활동가의 빈곤 때문에 안타깝게도 심포지움의 성과를 구체적인 국제사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국가보안법철폐운동의 반성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광범위한 연대와 구심점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일반국민을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그러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전문적 인식이 없었다.

*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대한 과거의 평가와 반성들은 대체로 위와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적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들이 올바르고 현실적인 폐지전략·전술의 창조로 이어질만큼 적극적이고 친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발제자는 나름의 시각으로 위 4가지 비판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한다.

*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은 통일운동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으나 그것 자체가 국보철운동이 한결같이 내세워야 할 주장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장기수·양심수문제를 국보철운동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손쉽기는 하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견지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광적인 탄압국면에 대응하는 의미에서의 국보철운동은 대중적 지지 보다도 오히려 고립을 초래한 측면이 많았다. 이것은 탄압국면에서 국보철을 주장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며 비탄압국면에서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상설적인 단위의 국보철 운동에 더 많은 기대와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전술의 상투성을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토론회·심포지움 따위도 "약방의 감초화"되고 있다. 기존의 반국가보안법이론 수준을 한단계 높인다는 굳은 결의와 각오가 없는 이상 토론회·심포지움은 억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단순히 "운동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 하

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국보철 전술만을 하루에 24시간 고민하는 단위가 있어야 끊임없이 새로운 전술이 나올 것이다.

*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과 개정 주장을 하는 세력간의 협력과 공동투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로따로 운동을 하거나 '개폐 공대위'라는 형태로 억지로 통합시켜버릴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 기존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 초조한 활동가들만의 운동이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세가지 의미에서 그렇다. 첫째로 역량있는 연구자와 전문지식인들을 폐지운동의 전략생산단위로 영입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고, 둘째로 그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고, 셋째로 광범위한 시민·대중과 함께 하려는 고민이 결여됐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은 이해하나 한편 활동가들의 '자기만족적인' 자만심에도 원인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수준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층의 노력이 없었다. 예를 들어 여러나라의 국가안보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같은 것은 우리나라 형법학자간의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 (따라서 학계쪽으로부터 국가보안법문제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평론, 엣세이, 선전물 등으로 파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제적 운동전략이 없었다. 국제적 노력은 한국인권단체협의회나 그 소속단체인 민변의 일부 변호사에 한정되어왔으며 그것은 그 자체로서 귀중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지만 적어도 아무런 장기적 전략이나 체계적 운동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95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만 흘러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노력에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합류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한다. 통상적으로 가난한 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의 분담금은 사실상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성격의 것이었고 언제까지나 일부 뜻있는 의사나 변호사에게 의존하고 있을 수도 없다.

3. 새로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향하여 -기본구상

과거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대한 반성을 딛고 새롭게 전개되어야 할 철폐운동을 그려보면 대

략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물론 '과거청산운동'과의 역량배치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밸제자는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많은 힘을 싣는 것은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에 가깝다. 따라서 아래에 개진하는 구상 모두가 당장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전술차원의 제안은 이 학술심포지움 자리에서는 보안상 생략한다.)

① 국가보안법문제에는 철저히 '인권'의 언어를 가지고 '인권'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인권'은 정치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소리높이 외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입지를 보장해준다. 또한 '인권'운동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UN이라는 장에서 쉽게 먹혀 든다는 이점이 있으며 일반시민·대중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으므로 특히 '냉전 이후' 시대에 있어서 운동의 대중성을 달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일운동과 국보철운동은 이제 막연히 혼재되어서는 안되며, 국보철운동은 자체의 독립된 전문성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

② 철폐를 주장하는 민민운동권뿐만 아니라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까지를 전략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단위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 단위는 가시화되어도 좋지만 반드시 가시화될 필요는 없다. 국보철운동의 '두뇌'이자 분산된 운동에 질서를 주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이 단위는 초일류급의 이론 및 아이디어를 갖춘 학자, 변호사, 정치인, 외국인, 운동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고 폐지운동에도 개정운동에도, 그리고 각계에도 믿음을과 영향을 주는 인사가 바람직하다. 이들은 국보철운동의 융성기는 물론 침체기에도 정례적으로 만나야 한다.

③ 위 ②와는 별도로 역량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입법에 관한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 일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본격적 논문집 발간, 그것의 영역과 국제적 보급, 수준 높은 토론회 조직 등을 목표로 한다. 위 ②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 스타디 그룹에도 결합하면서 부단히 연구와 철폐운동의 실천을 연결시키는 파이프 역할을 한다.

④ 위 ②와는 별도로 국제감각이 있는 활동가, 변호사, 학자들로 구성되는 국가보안법의 국제적로비활동을 위한 국제로비단을 만들어 UN과 외국 인권단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로비를 진행시켜야 한다. 그것이 무리라면 유능한 재외동포 몇 사람을 로비이스트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국제활동을 위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전략단위를 만들어야 한다. 위 ②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로비단에도 결합하면서 부단히 국보철운동에 있어서의 '국내'와 '국제'를 연결시키는 파이프 역할을 한다. 외국 (미국이 바람직하다)에 재외동포가 책임을 맡는 상설 로비사무소를 두는 일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해외 교포단체와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있어서의 연대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⑤ 위 ②와는 별도로 몇 사람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상설적 국가보안법 소송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피해사례를 널리 수집하면서 끊임없이 헌법소원, 재심, 손해배상소송, 고소·고발 등 업무를 체계적·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위 ②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 소송추진단에도 결합하면서 이 법률투쟁을 국보철운동의 전체상과 가능한 한 조화시켜기 위한 파이프 역할을 한다. 이 단위는 위 ④와의 협력 아래 국제송무도 추진해야 한다.

⑥ 국가보안법 철폐만을 자신의 유일·궁극의 사명으로 삼는 단체가 생겨야 한다. 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는 한편 꾸준히 자료를 정리하고 각종 홍보(인터넷에 계속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일 등)를 하면서 항상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횃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 위 ②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필요에 따라 공동대응기구 결성준비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공동대응기구가 결성될 경우 이 당위가 그대로 사무국 역할을 해내야 한다. 규모는 크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운동가로서 유능한 30대 후반~40대가 책임을 지고 상근·지도해야 한다.

⑦ 상설적 공동대응기구의 결성은 '과거청산운동'과의 역량배분문제, 탄압국면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현실적·비효율적이며 시의에 맞지도 않다. 그러나 공동대응기구의 필요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 ⑤가 결성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공동대응기구는 반드시 여러 단체와 개인의 굳은 결의 아래 한시적 활동을 전제로 해서 결성되어야 한다.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항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실제로 상당한 힘을 실을 수 있고 선출되는 집행위원장이 상근할 수 있는 기간(약 2~3개월)을 이 공동대응기구의 활동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

⑧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해서는 묘안이 없다. 운동이 가시화·구체화될 날을 위하여 세계도처에 널려 있는 많은 재단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기금을 낼 수 있는 희한한 재단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⑨ 그밖에, 전통적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는 변화되는 시대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가 없었다. 카피라이터, 인터넷 전문가, 국내 정치권에 로비할 전문가, 대중적이고 계몽적인 글을 생산할 수 있는 작가, 만화가, 외국어에 능한 사람들 등을 장기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착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①의 입장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②와 ⑥이 우선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